

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20476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204765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750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미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승준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한나

변론 종결2024. 10. 10.

판결 선고2024. 11. 7.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75040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2021. 4. 3.자 164,400,000원의 변제행위, 2021. 4. 5.자 9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2023. 10. 18. 항소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0. 2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변제기를 2021. 4. 30.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E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F은 2020. 11. 13.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갑: 이 사건 회사(F)

매수인: 피고 B, G1) 갑의 연대보증인: E, F

- 다 음 -

1. 갑과 을은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물품 인수대금에 대하여 56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합의한다.

2. 갑과 을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인수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1차 지급: 10,000,000원 (2020. 10. 26.까지 지급)

- 2차 지급: 50,000,000원 (2020. 11. 13.까지 지급)

- 3차 지급: 500,000,000원 [2021. 4. 15. 까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채무변제) 계약공증을 한다]

3. D의 대표이사 F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인수 물품대금 56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합의한다.

4. 특약사항

가. 갑과 갑의 연대보증인, 을은 위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기일을 2021. 4. 15.까지 및 덴탈마스크 완제품 24,000,000장을 담보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을 한다.

나. 갑은 을과의 협의로 덴탈마스크 완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을도 갑과의 협의로 위 덴탈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다. 위 덴탈마스크의 판매는 위 덴탈마스크 전체를 일시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나누어 판매할 수도 있다. 갑은 판매에 따른 물품대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당일 을의 물품대금부터 먼저 지급한다.

다. 갑이 물품대금의 전액을 지급할 경우 을은 덴탈마스크 기계 2대 및 컴프레서 주변기기를 갑에게 지급한다.

라.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이 완료되면 을은 을이 갑에게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3688 임가공비 사건 및 인천지방법원 2020카단106266 유체동산 가압류, 형사 사건을 7일 이내 취하한다.

바. 합의 및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이 이후을, 타 업체 대표들과 소통하지 않으며 본 합의 조건에 대하여 비밀유지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 B에 2021. 4. 3. 164,400,000원, 2021. 4. 5. 90,000,000원2) 합계 254,4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9,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한 50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과 통모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 B에 2021. 4. 3. 164,400,000원, 2021. 4. 5.

9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인 위 각 변제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 위 각 변제금 합계 254,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0. 11. 13.자 합의서(갑 제5호증) 특약사항 가. 및 나.항에 따라 피고

B에 덴탈마스크 완제품 24,000,000장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덴탈마스크 완제품을 매도함으로써 254,4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러한 변제 행위의 실질은 유체동산의 대물변제 내지 양도담보수취·실행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변제한 금액이 위 덴탈마스크 완제품을 매도하여 마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피고 B에 2020. 11. 13.경 강제집행 인락 조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후 유체동산 가압류 등을 풀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2021년 4월까지 변제금액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20. 11. 13.자 합의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덴탈마스크 완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이 사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바, 피고 B이 독자적으로 위 덴탈마스크 완제품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변제 행위를 양도담보수취·실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B이 변제받은 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지급받기로 합의한 돈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임가공료를 지급받지 못하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수제

판사심담

판사조인

- 1) 피고 B의 대표이사 이름이다.
- 2) 88,000,000원 + 2,000,000원